

제216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조 례 안 상 정

(조례 5건)

거 창 군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16-14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2016-15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6-16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6-17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16-18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3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14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2011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및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이후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조례를 제·개정 운영함에 따라 일부 조례 규정의 미비(법령 위반, 동일 감면의 규정상이, 조세형평 저해) 및 지연 반영 등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맞춰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함

나. 목적규정에 감면 제한에 관한 사항 추가함(안 제1조)

다.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안 제8조)

○ 감면 근거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함

라.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함(안 제9조)

마. 최소납부세제 도입함(안 제15조)

○ 감면 특례의 제한 및 예외사항 규정함

바. 감면기한의 특례 신설함(제18조)

○ 상위법령 감면유효기간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나. 예산 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6. 2. 17. ~ 3. 0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2년”을 “3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년”을 “5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군·구의 장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군·구의 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군·구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군·구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15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대상에 기존의 농작물에 산림작물을 추가하여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 농작물 ⇒ 농작물 및 산림작물로 확대함

나. 산림작물 피해액 산정기준 신설함(안 제4조)

○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출다. 피해예방시설 지원 근거 마련함(안 제10조)

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지원 근거 마련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환경부고시, 위임행정규칙) 제18조

나. 예산조치: '16년도 예산 217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완화함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6. 2. 12. ~ 3. 0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를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농작물·산림작물을 말한다.

제2조3호 중 ““농작물피해”란 농업인”을 ““농작물 등 피해”란 농업인·임업인 (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으로 “농작물”을 “농작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농업인”을 “농업인 등”으로 “농작물”을 “농작물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피해농업인””을 ““피해농업인 등””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농작물”을 “농작물 등”으로 “농작물 밭”을 “농작물 등과” “농업인”을 “농업인 등”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적용범위)”를 “(피해보상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이 조례는”을 “군수는”으로 “농작물.”을 “농작물 등 피해 및”으로 “피해농업인에 한하여”를 “피해농업인 등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3조 다음의 “제2장 농작물피해 보상”을 삭제한다.

제4조 제목 “(피해액 산정기준)”을 “(농작물 등 피해액 산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정은”을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으로 “산출한다.”는 “산출하고, 산림작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다.”로 한다.

제5조 제목 “(피해보상액 산정)”을 “(농작물 등 피해 보상액 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7조제3항·제8조제2항·제9조제2항 중 “피해농업인”을 “피해농업인 등”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농작물피해”를 “농작물 등 피해”로 한다.

제6조 제목 “(피해신고 및 조사)”를 “(농작물 등 피해 신고 및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피해농업인”을 “피해농업인 등”으로 “농작물피해 발생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를 “농작물 등 피해 발생사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피해농업인”을 “피해농업인 등”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작물피해”를 “농작물 등 피해”로 한다.

제7조 제목 “(피해보상 절차)”를 “(농작물 등 피해 보상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피해농업인”을 “그 피해보상금 지급결정을 피해농업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피해농업인”을 “피해농업인 등”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금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를 “군수에게 그 피해보상금을”로 한다.

제7조 다음의 “제3장 인명피해 보상”을 삭제한다.

제8조 제목 “(피해신고 및 조사)”를 “(인명피해 신고 및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피해농업인”을 “피해농업인 등”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피해”를 “인명피해”로 “14일”을 “5일”로 한다.

제9조 제목 “(피해액 산정 및 지급기준)”을 “(인명피해액 산정 및 지급기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피해농업인”을 “피해농업인 등”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인명피해 지원금청구서를”을 “피해지원금을”로 한다.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피해예방시설의 지원)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의 세부기준 및 방법·절차 등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유해야생동물 포획지원 등) 군수는 관내 농작물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u></p> <p><u>제1장 총칙</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 및 농작물피해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유지를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p>1. “야생동물”이란 야생포유류, 야생조수, 독사류 등을 말한다.</p> <p>2. “농작물”이란 「<u>농어업재해대책법</u>」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을 말한다.</p> <p>3. “<u>농작물피해</u>”란 농업인이 직접 재배·경작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p> <p>4. “<u>인명피해</u>”란 농업인이 군내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재배하는 중에 야생동물로 인하여 직접 신체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p> <p>5. “<u>피해농업인</u>”이란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일 기준 군내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재배하는 중에 농작물 및 인명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말한다.</p> <p><u>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인명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보상 청구를 한 피해농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u>제2장 농작물피해 보상</u></p>	<p><u>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u></p> <p><u><삭 제></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정의) -----</u></p> <p>1. -----</p> <p>2. “<u>농작물 등</u>”이란 「<u>농어업재해대책법</u>」 제2조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농작물·산림작물을 말한다.</p> <p>3. “<u>농작물 등 피해</u>”란 농업인·임업인(이하 “<u>농업인 등</u>”이라 한다)---<u>농작물 등</u>-----</p> <p>4.-----<u>농업인 등</u>-----<u>농작물 등</u>-----</p> <p>5. “<u>피해농업인 등</u>”--「<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3조제2호와 「<u>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u>농작물 등</u>-----<u>농작물 등과</u>-----<u>농업인 등</u>-----</p> <p><u>제3조(피해보상 요건) 군수는-----</u> <u>---농작물 등 피해 및-----</u> <u>-----피해농업인 등에</u> <u>한정하여-----</u></p> <p><u><삭 제></u></p>

현 행	개 정 안
<p>제4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이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된 피해면적에 피해율과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 가격의 100분의70을 곱하여 산출한다.</p>	<p>제4조(농작물 등 피해액 산정기준) ①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산출하고, 산림작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다.</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피해보상액은 피해농업인에게 최대 500만원이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되, 동일 경작지에 대한 지급금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5조(농작물 등 피해 보상액 산정) ① ----피해농업인 등-----</p>
<p>② ~ ③ (생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농업인은 농작물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농작물피해 발생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p>	<p>제6조(농작물 등 피해 신고 및 조사) ① 피해농업인 등-----농작물 등 피해 발생사실을-----</p>
<p>② 읍·면장은 신고접수 후 농작물피해 현장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농작물 등 피해-----</p>
<p>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농업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작물피해 사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피해농업인 등-----농작물 등 피해-----</p>
<p>제7조(피해보상 절차) ①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밀조사결과를 토대로 피해보상액을 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피해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7조(농작물 등 피해 보상절차) ① -----그 피해보상금 지급결정을 피해농업인 등-----</p>
<p>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피해농업인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금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p>	<p>② -----피해농업인 등----- -----군수에게 그 피해보상금을-----</p>
<p>③ 군수는 피해농업인에게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③ -----피해농업인 등-----</p>
<p>④ (생략)</p>	<p>④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u>제3장 인명피해 보상</u></p> <p><u>제8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농업인 또는 그 가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u>② 읍·면장은 신고접수 후 피해마을 이장과 피해농업인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이하 같다) 입회하에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u>제9조(피해액 산정 및 지급기준) ① (생략)</u> <u>② 피해지원금은 직접 피해농업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피해농업인이 사망하였거나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u> <u>③ 피해농업인이나 그 가족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인명피해 지원금청구서를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u> <u>④ (생략)</u></p> <p><u>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u><삭 제></u></p> <p><u>제8조(인명피해 신고 및 조사) ① 피해농업인 등-----인명피해-----5일-----</u> <u>② -----</u> <u>피해농업인 등-----</u> <u>-----</u></p> <p><u>제9조(인명피해액 산정 및 지급기준) ①(현행과 같음)</u> <u>② -----피해농업인 등-----</u> <u>-----피해농업인 등-----</u> <u>③ 피해농업인 등-----피해지원금을-----</u> <u>-----</u> <u>④ (현행과 같음)</u></p> <p><u>제12조(시행규칙) -----</u> <u>-----</u></p> <p><u>제10조(피해예방시설의 지원)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의 세부기준 및 방법·절차 등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u>제11조(유해야생동물 포획지원 등) 군수는 관내 농작물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u></p>

거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산림작물, 인명피해 재정지원

나. 관련 조문

- 제3조(피해보상 요건)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산림작물, 인명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보상 청구를 한 피해 농업인 등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피해예방시설의 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총 비용(a - b)		217	228	239	251	264	1,199
세출	군 비	217	228	239	251	264	1,199
	소계(a)	217	228	239	251	264	1,199
세입							
	소계(b)						

3. 관련 의견

- 물가 및 인건비 등의 상승에 따라 지원예산이 증가 할 것으로 사료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산림작물, 인명피해 재정지원
(농작물 등 피해, 인명피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등)
- 2016년도 예산확보액 : 217백만원 (국비 20, 도비 17, 군비 180)

작성자 : 녹색환경과장 김 삼 수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16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염소, 산양, 메추리가 사육대상 가축에 포함됨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시켜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에 “염소, 산양, 메추리”를 포함함(안 별표 1)

- 염소, 산양: 300미터 이내 사육제한
- 메추리: 800미터 이내 사육제한

나.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에 제외되는 소규모 사육두수에 “염소, 산양, 메추리” 추가함(안 제4조)

- 염소, 산양: 5마리 이하일 때
- 메추리: 20마리 이하일 때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나. 예산 조치: 해당 없음

다. 합의사항: 기획감사실(법무통계,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강화함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6. 2. 03. ~ 2. 2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 중 “개”를 “개·사슴·양(염소 등 산양 포함)”으로 “오리”를 “오리·메추리”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염소·산양·메추리를 일부제한구역에서 사육한 가축사육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가축사육 제한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 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p> <p>1. ~ 6. (생략)</p> <p>7. 일부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의 사육으로 소·젖소·말·돼지·<u>개</u>는 5마리 이하, 닭·<u>오리</u>는 20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p>	<p>제4조(가축사육 제한 등) ① ----- ----- -----</p> <p>②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 ----- -----개·사슴·양(염소 등 산양 포함)----- <u>오리·메추리</u>----- -----</p>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 관련)

구분	전부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대상지역	<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p> <p>○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p> <p>○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 지역</p> <p>○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p>	<p>○ 주거 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대지 경계선에서 가축사육 시설 예정부지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말: 200미터 이내 - 젓소·사슴·양(염소 등 산양 포함): 300미터 이내 - 돼지·개·닭·오리·<u>메추리</u>: 800미터 이내

※ 일부제한구역 적용기준

1. “가축사육시설” 은 신축 또는 증축하는 시설로 한다.
 -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규모미만 시설 포함
2. “직선거리” 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산정한다.
3. “대지”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17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 군 발주 공사의 내용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의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

나. 불필요한 서류제출 조항 삭제하여 규제 개선함(안 제5조, 별지 제1호서식)

다. 공사시행의 통보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6조)

(현행) 군수는 공사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설) 읍면장은 통보받은 공사의 내용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2014.5.23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 조치: 해당 없음

다. 합의사항: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6. 2. 17. ~ 3. 0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사감독”이란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중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하고, 읍·면장은 통보받은 공사의 내용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16 ~ 18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폐지이유

- 「거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설치 근거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08. 3. 28.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 개정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요건에 현재까지 해당되지 않아 「거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
-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는 거창군 일반회계가 승계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51호, '08.3.28., 폐지]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합 의: 기획감사실(예산, 법무통계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6. 2. 03. ~ 2. 22.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기반 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승계한다.

②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세입에 이입한다.